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운영 내규

2023년 2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전통의상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전통의상학과 소속 교수들은 전통의상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전통의상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5조 (과목개설 및 필수교과목 이수) 전통의상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전통의상 연구에 필수적인 아래의 교과목은 학위과정 중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필수 이수 내용	개설 교과목	필수 이수 과목수	
		석사과정 4과목	박사과정 6과목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사특론 한국고대복식사 I 한국고대복식사 II	택1	석사과정 필수 이수 4과목 외에, 왼쪽에 제시된 '개설 교과목' 중 임의의 2과목 추가 수강.
사료강독	복식사료강독 I 복식사료강독 II 한국복식사료연구 I 한국복식사료연구 II	택1	
유물보수 및 보존처리	복식유물보수 I 복식유물보수 II 유물보존처리	택1	
의복구성	한국의복구성 I 한국의복구성 II 한국의복구성특론	택1	
* '유물보수 및 보존처리'는 교과목 미개설 등 학과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충족 요건에서 면제 가능.			

제6조 (교·강사 배정) 각 교과목은 전통의상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강사를 배정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 1편 게재(① 단독논문 ② 공동논문은 지도교수와 2인 공저일 경우 100% 인정. 지도교수와 타 참여진의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진(n)의 수로 나눈 백분율(1/n%)만큼 인정(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 인정).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저일 경우 참여진(n)의 수로 나눈 백분율(1/n%)만큼 인정(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 인정).

1. 논문 1편당 2과목 면제.

1. 심사결과 '게재가(Accepted)' 시점부터 인정.

1.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심사 신청을 위해 갖춰야하는 '소논문 발표 1편' 충족 외에 별도의 논문을 발표해야 함.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학칙에 따라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 되, 실기 교과목은 실기(작품제작)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전통의상학 연구에 필요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취득은 학위논문과 학위작품(작품제작보고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학위논문 대체 석사학위자의 박사과정 진학) 학위작품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음의 조건 충족시 박사과정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1. 진학 전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소논문 1편 게재(① 단독논문 ② 공동논문은 지도교수와 2인 공저일 경우 100% 인정. 지도교수와 타 참여진의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진(n)의 수로 나눈 백분율(1/n%)만큼 인정(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 인정).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저일 경우 참여진(n)의 수로 나눈 백분율(1/n%)만큼 인정(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 인정).

1. 석사과정 중 종합학력시험 면제 적용을 받은 소논문 이외 별도의 논문을 발표해야 함.

1. 심사결과 ‘게재가(Accepted)’ 시점부터 인정.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4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석·박사과정 중 혹은 수료 후 적절한 시기에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예비발표) 학위논문심사 최소 한 달 전까지 예비발표를 진행한다.

제16조 (박사과정의 소논문 발표)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혹은 중국 核心期刊 학술지에 소논문 1편을 발표한다.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단독논문 ② 공동논문은 지도교수와 2인 공저일 경우 100% 인정. 지도교수와 타 참여진의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진(n)의 수로 나눈 백분율(1/n%)만큼 인정(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 인정).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저일 경우 참여진(n)의 수로 나눈 백분율(1/n%)만큼 인정(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 인정).

1. 심사결과 ‘게재가(Accepted)’ 시점부터 인정.

제17조 (논문심사위원)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18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1. 2인 이내 전시회 개최
2.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전국 규모의 공신력있는 공모전 입선 2회 이상 혹은 장려상 1회 이상 수상.

제19조 (논문대체 제출) 학과로 학위작품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제본본과 국문 파일을 제출한다(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보고서는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2023. 02. 21.)

제1조 (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운영 내규는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이 운영 내규는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며 적용한다.